

행정안전부 예규 제00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 8. 00.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조)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조, 별표 9)
-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

3. 기타

가.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동예규 기관과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민방위경보 전파대상”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사이렌장비(음성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사이렌장비”라 한다)·재난문자방송장비·방송통제장비·방송사연결장비·TV자막통제장비·조기경보장비·동시전파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다매체경보통제장비·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8. “시·군·구 경보책임자”란 경보발령·전달체계에 따라 경보가 발령·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군·구 민방위 경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12. “재난문자방송”이란 민방위 상황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방송(CBS)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해상전력”을 각각 “지상·해상전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지·해상전력”을 “지상·해상전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핵 경보 :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③ 재난 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의 제목 “민방공경보”를 “민방공 경보”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7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공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 제1민방위정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1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 제2민방위정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 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정보통제소, 시·도정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을 “(민방공 경보 발령의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을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 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을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로, “종류, 발령일시, 발령지역”을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로, “정보통제소장”을 “정보통제소장(상황반장)(이하 “시·도 정보통제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항공기공격시”

를 “항공기 공격 시”로, “탄도탄공격시”를 “탄도탄 공격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장비”를 “해당 장비”로, “핫라인, 전화”를 “직통전화”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장(시·도 경보통제소 상황반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으로,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를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로, “발령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로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중앙경보통제소(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을 “(민방공 경보의 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군사령관, 시·도경보통제소장 등에게 경보발령”을 “공군사령관의 경보 발령 요청을 받거나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경보전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제대”를 “방송통제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3.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8과 같이 경보 발령지역의 시·도경보통제소에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경보 발령 이외 지역의 시·도경보통제소에 경보 발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4.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에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경보 발령이 있는 경우 시·도경보통제소로 하여금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TV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6. 재난문자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자체 전파하고”를 “기관 내부,”로,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달”을 “즉시 전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를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 발령 요청을 받거나”로, “읍·면·동장 또는 지역 군부대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을 “읍·면·동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으로, “전달한다”를 “전달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방송통제대”를 “방송통제장비”로,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TV 자막방송”으로, “전달”을 “전달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일제지령대”를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로, “경보단말에 경보상황 전파”를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라. 재난문자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제5항제1호마목(중전의 라목) 중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별표2”를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별표 2”로, “민방위경보 전파대상”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으로, “경보발령사항 전달”을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보단말”을 “사이렌장비”로, “민방위경보 전파대상”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으로, “있도록”을 “있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즉시 경보를 전달”을 “경보를 즉시 전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군·구경보통제대”를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 발령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경보통제장비”로, “읍·면·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을 “읍·면·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시·도경보통제소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사이렌장비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말한다),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⑦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민방공경보방송)”을 “(민방공 경보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보방송은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를 “경보전달은 사이렌장비, 재난문자방송(CBS), 라디오,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하고”로, “및 긴급재난 문자방송(CBS)등을”을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전달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를 “(민방공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단말이 자동적으로 울리지”를 “관할 구역 내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이렌장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로, “경보 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단말을 울리거”를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사이렌장비를 작동시키거”로, “경보단말을 울리도록”을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보전달 장비”를 “주요기관연결장비”로, “전달한다”를 “전달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연결장비”를 “방송사연결장비”로, “실시한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를 “(민방공 경보 오보 시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방송사업자를”을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 등을”로, “2회 이상 실시하고”를 “실시해야 하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방송사업자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단말”을 “경우 시·도경보통제소는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사이렌장비, 재난문자방송 등을 이용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경보 오보, 오발령, 사이렌장비 잘못울림이 발생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를 이용한 음성방송 등을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가 아니더라도 직접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발령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간, 발령지역, 발령사유”로, “보고 한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시·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

소장(상황팀장), 시·도 경보통제소장(상황반장),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고 등) 재난 경보에 따른 전달 및 불능 시의 조치, 오보 시의 조치, 보고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1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2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20조)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시설관리책임자”를 “시설관리 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교육계획은 매년 1. 20.까지”를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로, “12. 20.”를 “12월 20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22조)의 제목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을 “(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은”으로, “경보단말을”을 “사이렌장비를”로, “사유 발생시”를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단말”을 “사이렌장비”로, “활용할 일자”를 “활용할하는 날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경보단말 활용”을 “활용”으로 하

고, 같은 항 후단 중 “경보단말을”을 “사이렌장비를”로, “경보단말”을 “사이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정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4. (생략)</p> <p>5. <u>“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방송통제장비·일체지령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TV자막통제장비·조기경보장비·다매체경보통제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사연결장비·경보단말(警報端末)·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 등 민방위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5. <u>“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사이렌장비(음성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사이렌장비”라 한다)·재난문자방송장비·방송통제장비·방송사연결장비·TV자막통제장비·조기경보장비·동시전파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다매체경보통제장비·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u></p>

6.·7. (생략)

8.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이하 “시·군·구 경보책임자 “라 한다)란 경보발령·전달 계통에 따라 경보가 발령·전달 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 군·구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 “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 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 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9.·10. (생략)

11.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 물” 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 한다.”

<신설>

제4조(경보의 종류) ①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시·군·구 경보책임자”란 경보발령·전달체계에 따라 경 보가 발령·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 로서 “시·군·구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 “을 말한다. 다 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 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 를 말한다.”

9.·10. (현행과 같음)

11. -----민 방위 경보 전파 대상 -----

-----.

12. “재난문자방송”이란 민방위 상황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 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 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하는 재 난문자방송(CBS)을 말한다.”

제4조(경보의 종류) ① (현행과 같

② 민방공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3. (생략)

<신설>

4.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③ 재난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음)

② -----
-----.

1. -----
----- 지상·
해상전력-----

2. -----
----- 지상·
해상전력-----

--

3. (현행과 같음)

4. 핵 경보 :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5. -----
----- 지상·
해상전력-----

③ 재난 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제2장 민방공경보

<신 설>

제2장 민방공 경보

제6조(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공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

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 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8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중앙경보통제소(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시·도 경보통제소 상황반장 또는 시·군·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
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
공 경보를 발령한다.

③ (생략)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

예고 등) ① 공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
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
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
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
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
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
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리
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경보통제
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
(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야 한다.

②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

경보책임자)-----

-----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

----- 발령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제 유지 등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 ① 공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경보 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지 못할 경우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

제7조(민방공 경보 발령의 요청 등)

- ① -----

-----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 등을 -----.
<단서 삭제>
- ② -----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

-----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

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공격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공격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핫라인, 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① (생략)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 시·도경보통제소장 등에게 경보발령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

경보통제소장(상황반장)(이하 “시·도 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③ -----
----- 항공기 공격 시 -----
----- 탄도탄 공격 시 -----
----- 해당 장비 ----- 직통전화 -----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군사령관의 경보 발령 요청을 받거나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경보전달 -----

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구 경보단말에 경보를 전달한다.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한다.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 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표 8과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

4.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한다.

<신 설>

전달해야 한다.

2. 방송통제장비-----

3. 동시전과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8과 같이 경보 발령지역의 시·도경보통제소에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경보 발령 이외 지역의 시·도경보통제소에 경보 발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4. 동시전과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에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경보 발령이 있는 경우 시·도경보통제소로 하여금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신 설>

5. (생 략)

③ (생 략)

④ 주요기관에서는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은 하급 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선박·철도·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구 정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면·동장 또는 지역 군부대장이 경보전달

따라 TV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6. 재난문자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표 2-----

----- 기
관 내부, -----

----- 관련 기관-----

-----.

⑤ -----
----- 즉시 전달-----
-.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 발령 요청을 받거나 -----
----- 읍·면·동장이 경보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

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

가.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정보단말에 정보전달

나.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

다.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정보단말에 경보상황 전파

<신 설>

라.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도, 시·군·구,

---- 전달해야 한다.

가.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나. 방송통제장비-----

----- TV 자막방송-----

----- 전달해야 한다.

다.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라. 재난문자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마. -----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별표 2-----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

읍·면·동, 소방서, 시·도
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
보발령사항 전달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군·구 경보단말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
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
물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다.

3.·4. (생략)

⑥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
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군·구경보통제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
·면·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
말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
란한 경우에는 시·도경보통제
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
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경보
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
내 경보단말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
지 않은 경우 시·군·구경보통

----- 경보
를 전달해야 한다.

2. -----
----- 사이렌장비 -----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
---- 있도록 해야 -----
-----.

3.·4. (현행과 같음)

⑥ -----
----- 경보를 즉시 전달-
-----.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 발령 요
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경보통제장비 ----- 읍·
면·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
비를 -----
-----.
--- 시·도 경보통제소장-----
-----.

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 경
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사이렌장비까지 즉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
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

제대 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경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⑦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및 읍·면·동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민방공경보방송) 제9조에 따른 경보방송은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말한다),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⑦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민방공 경보방송) ① -----
-- 경보전달은 사이렌장비, 재난 문자방송(CBS), 라디오, TV 자막 방송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하고 --

----- 등을 -----

-----.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전달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단말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 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현지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 하여야 한다.

③ 주요기관은 경보전달 장비로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한다.

④ 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

제11조(민방공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① -----

----- 관할 구역 내 경
보발령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
이렌장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 경
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사이렌장
비를 작동시키거-----
----- 사이
렌장비를 작동하도록 ----.

② -----

----- 경우에는 -----

-----.

③ ----- 주요기관연결장비-

----- 전달해야 한다.

④ ----- 방
송사연결장비 -----

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한다.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 ① (생략)
-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단말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 ③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 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 실시해야 한다.

제12조(민방공 경보 오보 시의 조치)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 등을 실시해야 하고 -----
----- . -- 경우 시·도경보통제소는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 -----
----- .
- ③ -----

----- 이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사이렌장비, 재난문자방송 등을 이용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

1.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관내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2.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단말 잘못된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경보 오보, 오발령, 사이렌장비 잘못된림이 발생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를 이용한 음성방송 등을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가 아니더라도 직접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① ----- 받

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등을 종합하여 보고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재난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한 경우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시·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6조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종류,

령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간, 발령지역, 발령사유-----

----- 보고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시·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시·도 경보통제소장(상황반장),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 상황 등을 서면 또는 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2. 전력수급단계가 경계단계(200~100만kW) 또는 심각단계(100만kW 이하)일 때

④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지방 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보발령자는 경보발령상황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시, 제1항에 따른 재난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또는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재난경보를 발령·전달한 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지진해일주의보는 재난경계경보를, 지진해일경보는 재난위험경보를 전달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 고장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해당 재난부서의 담당자 또는 재난상황실 담당자는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 재난상황 등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경보발령의 사전준비)

재난 경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삭 제>

1. 경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가. 댐 및 하천수위, 강우량, 홍수, 폭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난 관련 정보

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전력수급 위기경보 등 재난관련 정보

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하천주변지역,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경보전달수단 확보

3. 재난 경보 상황에 맞는 경보방송문안 사전 준비

4.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점검 및 경보단말담당자 지정

5. 재난관련기관간의 통신수단 및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
가 재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
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

<삭 제>

과

3.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문자전

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민방위경
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및 경
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
항 전달(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도 같다.)

4. 제1호, 제2호가 곤란한 경우에

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
장)에게 경보전달 요청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
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
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군·구 경보통제대를 이용

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읍·면·동 경보담당자가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
달하도록 지시

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

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
보전달을 요청

3. 별표5를 참고하여 지역실정과

상황에 맞게 음성으로 경보전파

③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
령하거나 시·도경보통제소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 별표5를 참고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제17조(재난경보방송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경보 발령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등)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경보들의 전달을 요청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결과를 경보전달요청자 및 상급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

제19조(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경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면·동 경보담당

<삭 제>

제15조(보고 등) 재난 경보에 따른 전달 및 불능 시의 조치, 오보 시의 조치, 보고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① ~ ⑤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계획은 매년 1. 20.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 20.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지방자치단체 장 -----

-----.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

----- 시 -----
시설관리 책임자 -----

-----.

② ----- 자 -----
체교육 및 훈련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12월 20일-----

-----.

③ (생략)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경보단말을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예보의 발령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일자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보단말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 ① ----- 지방자치단체장은 ----- 사이렌장비를 -----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단서 삭제>

② ----- 사이렌장비 ----- 활용할하는 날의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자치단체장 ----- 활용 -----

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단말을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단말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생략)

----. ----- 사이렌장비를 ----
----- 사이렌 -

-----.

제19조 (현행 제23조와 같음)